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관련 830
----------	-----------

제출년월일 : 2009년 5월 2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2009년 5월 11일자로 서울특별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공익에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지라도 타 보훈자와는 형평성 문제를 보이고 있음
 - 가.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업무는 본질상 통일성을 요하는 전국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간 동일지원 기준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 나. 예우 및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제한하는 것은 참전과는 무관하나 비무장지대 근무로 인하여 발병된 고엽제후유증·후유증 등외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타 보훈대상자와 형평성 문제초래
 - 다. 참전자(6.25한국전쟁, 월남전쟁) 외에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등 비참전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 지원하여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보훈의식 고취는 필요함.

2. 따라서 참전자로 제한한 참전명예수당은 비참전유공자와의 차별로 부각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훈대상자간 위화감 조성 등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의를 요구함.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